

정 관

[제정 2018.10.30]

일부개정 2019.07.05.

일부개정 2020.07.14.

일부개정 2022.07.06.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의 상호는 "지케이엘워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KLWITH"(약칭 GKLW)라 표시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카지노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당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카지노 영업장 운영 서비스업
2. 조리 및 식음 서비스업
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4. 환경미화 서비스업
5. 고객 수송업
6. 주차 관리 및 대행업
7. 사업시설 경비순찰업
8. 보건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
9. 인력파견업
10.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4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당사 홈페이지(www.gklwith.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9.07.05.>

제2장 자본과 주식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제8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0,000주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10조 (명의개서 등)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주의 주소 등 신고)

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와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

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3조 (주주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10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5.>
- 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주주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16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에 관하여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17조 (이사와 감사의 수)

- ① 당 회사의 이사는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그 중 1인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

회사에서 출자회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7.05.><개정 2020.07.14.>

-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하되,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서 재무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2.07.06.>
-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제15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19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기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0조 (대표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제15조의 결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 한다.
- ② 이사회 소집은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 및 감사가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에 관한 사항
 - 2. 경영목표·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변경 <개정 2019.07.05.>
(직제, 이사회, 보수규정, 인사규정, 복지규정, 회계규정 등)
 - 4.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계획
 - 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타 필요한 경우 상법을 준용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7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 그 경과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제28조 (회계연도)

당 회사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

-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②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

총회 1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31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 (사규 등의 제정)

당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 (직원의 구성 및 임면)

당 회사의 직원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4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최초 회계연도)

당 회사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발기인이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지케이엘워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 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8년 10월 30 일

[발기인(법인)]

그 랜 드 코 리 아 레 저 주 식 회 사 보통주식 90,000주

(법인등록번호 : 111271-000596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

대표자 사장 유 태 열 (인)

부 칙 (2019년 7월 5일)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7월 14일)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7월 6일)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